

<제로페이 가맹점 약관 개정 고지>

2022.07.01(금)

개정 전	개정 후
<p>제2조 (용어의 정의)</p> <p>①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하“운영기관”라 함)에 소상공인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 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하며, 참여결제 사업자가 1개 가맹점의 식별정보를 참여결제사업자간 공유하여 복수의 참여결제사업자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가맹점을 말합니다.</p> <p>② “소상공인간편결제”란,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에서 모바일 등으로 거래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지급거래를 말합니다.(이하, “간편결제”라 함)</p> <p>③ “참여결제사업자”란, 간편결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이하, “참여기관”이라 함)를 말합니다.</p> <p>④ “간편결제회원”이란, 참여기관과 회원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이하, “회원”이라 함)를 말합니다.</p> <p>⑤ ~ ⑥ (생략)</p>	<p>제2조 (용어의 정의)</p> <p>①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u>참여사업자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운영기관(이하“운영기관”이라 함) 간 계약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하며, 참여결제사업자의 간편결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u>를 말합니다.</p> <p>② “소상공인간편결제”란,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에서 모바일 등으로 거래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u>제11호</u>에 의한 전자지급거래를 말합니다.(이하, “간편결제”라 함)</p> <p>③ “참여결제사업자”란, 간편결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u>운영기관과 간편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휴 서비스 계약을 근거로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u>(이하, “참여기관”이라 함)를 말합니다.</p> <p>④ “간편결제회원”이란, <u>참여기관과 회원계약 또는 참여기관과의 제휴 서비스 계약 또는 운영기관과의 제휴 서비스 계약</u>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외국인 포함)를 말합니다.(이하, “회원”이라 함)</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3조 (약관의 적용)</p> <p>① (생략)</p> <p>② 가맹점은 참여기관 이외 결제사업자의 회원에게는 간편결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참여기관 중 <u>특정 결제사업자의 회원에게만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등 참여기관간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u></p> <p>③ 가맹점은 운영기관이 제휴계약을 체결한 <u>해외 간편결제 회원에게 간편결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은 참여기관과 동일하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u> 다만, 거래승인 또는 취소, 가맹점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등이 참여기관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p>	<p>제3조 (약관의 적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가맹점은 참여기관 이외 결제사업자의 회원에게는 간편결제를 제공할 수 없으며, <u>참여기관과 운영기관의 계약에 의해 특정 참여사업자의 회원에게만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관 간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u></p> <p>③ 가맹점은 <u>참여기관과 운영기관간 제휴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간편결제 회원에게 간편결제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수수료율</u>, 거래승인 또는 취소, 가맹점 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등이 이 약관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p>
<p>제4조 (간편결제의 방법)</p> <p>① 간편결제는 가맹점이 가맹점 정보가 수록된 결제매체를 회원에게 제시하고 회원이 <u>가맹점정보를 참여기관의 유효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동 가맹점 정보를 인식하거나, 회원이 참여기관의 유효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요청하고 회원의 결제비밀번호 입력 후 회원과 가맹점이 QR코드 또는 기타 결제매체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고 금융위원장이 검토하여 보안성 등을 인정한 방법으로 참여기관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참여기관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거래가 완료됩니다.</u></p> <p>② ~ ⑧ (생략)</p>	<p>제4조 (간편결제의 방법)</p> <p>① 간편결제는 가맹점이 <u>유효한</u> 가맹점 정보가 수록된 결제매체를 회원에게 제시하고 회원이 <u>참여기관과 운영기관 간의 유효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동 가맹점 정보를 인식하거나, 회원이 본인의 결제비밀번호 입력한 후 참여기관의 유효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QR코드 또는 기타 결제매체로 가맹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요청하고, 참여기관과 운영기관으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거래가 완료됩니다.</u></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제5조 (간편결제 판매시 준수사항) ① ~ ⑧ (생략) <신 설></p>	<p>제5조 (간편결제 판매시 준수사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허위매출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⑩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본 조 간편결제 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위반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을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⑪ 가맹점이 본 조 제10항의 조사 결과 간편결제 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
<p>제6조 (가맹점수수료율)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⑤ (생략) ⑥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우대수수료율(부가세 포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 연매출액 8억원 이하 : 0% 2. 연매출액 8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0.3% 3. 연매출액 12억원 초과 : 0.5% 4. 해외 간편결제 회원 거래 : 0.9% ⑦ ~ ⑩ (생략)</p>	<p>제6조 (가맹점수수료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기관은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참여기관과의 제휴 계약에 의한 간편결제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외 간편결제회원에 대한 거래시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의 금융회사 또는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식 카드를 지급수단으로 하는 경우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 ⑥ (현행 ④ ~ ⑤와 같음) ⑦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u>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3 제2항 등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기업</u>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우대 수수료율을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에 통보해야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⑧ ~ ⑩ (현행 ⑦ ~ ⑩와 같음)</p>
<p><신 설></p>	<p>제10조 (간편결제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①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간편결제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간편결제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제17조 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1.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4조 제5항, 제5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5. 가맹점 신청 서류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③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제12조에서 정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간편결제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기관이 가맹점에 이미 간편결제판매대금을 지급한</p>

	<p>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p> <p>④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간편결제 부정사용 또는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그 거래에 대한 사고 조사 기간 동안 <u>최장 30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u></p> <p>⑤ 제5조 제10항에 따른 조사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은 가맹점으로 해당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p> <p>⑥ 본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간편결제 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p>
<p>제10조 (간편결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p> <p>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여기관이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p> <p>② (생략)</p> <p>③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제11조 (간편결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p> <p>① <u>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u>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u>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u>이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제12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p> <p>① (생략)</p> <p>1. (생략)</p> <p><신 설></p> <p>2. ~ 7.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3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5조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u></p> <p>3. ~ 8. (현행 2. ~ 7.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p> <p>① 가맹점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u>소상공인간편결제를 활용한 서비스(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모바일 상품권,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 수당 등)</u>에 자동 가맹된 것으로 보고 가맹점과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 항목별 가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p> <p>② (생략)</p>	<p>제16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p> <p>① 가맹점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u>간편결제를 활용한 서비스(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모바일 상품권, 각종 정부·지자체 지원 수당, 해외결제, 신용카드, 현금카드, 모바일 포인트, 휴대폰 결제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u>에 자동 가맹된 것으로 보고 가맹점과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 항목별 가맹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운영기관은 가맹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p> <p>① ~ ② (생략)</p> <p>③ <u>참여기관</u>은 가맹점이 제5조 제1항, 제8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p>	<p>제19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운영기관 또는 참여기관</u>은 가맹점이 <u>제5조</u>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p>
<p><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부속약관></p> <p>제1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p> <p>①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과 연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등록됩니다.</p> <p>② ~ ④ (생략)</p>	<p><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부속약관></p> <p>제1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p> <p>①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과 연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등록됩니다. <u>다만, 운영기관이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과 연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닙니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과태료)</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제4조 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p> <p>② 제5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생략)</p> <p><부칙> 제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p>	<p>제8조(과태료)</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p> <p>②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부칙> 제5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p>
---	--

※ 개정된 약관은 2022.08.01.(월)부터 적용됩니다.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윤 완 수

